



제 안 설 명

-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고 령 군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김 세 희 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원 주요 개정 권고사항으로 산림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의 부당 사용 방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산림청이 확정된
표준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휴양림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고령군 다자녀가정의 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군의 인구
증가시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및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에서 고령군 다자녀가정이 비수기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요금의
70% 할인 정책을 신설하였습니다.

○ 조례 제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서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그 사유를 한정하여 휴양림 시설물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 제13조 (관리자 예약)에서 담당자가 부당예약을 하지 않도록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여 내부승인절차를 받게하는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일

시설사업소장 김 세 희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4. . .	
연월일	(제 회)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령군수 (시설사업소장)
제출 연월일	2024. . .

법무팀 심사필

고령군 미승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

제출일자 : 2024. . .

제출자 : 고령군수

1. 전부개정 사유

- 가.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목적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나. 감사원 주요 개정 권고사항으로 산림휴양시설 통합관리시스템(숲나들 e)의 관리자 계정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 및 예약제의 시설물을 지정·운영 시 사유를 한정하여 숲나들e 시스템의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함.
- 다. 휴양림 예약·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휴양 시설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규정 정비 (안 제7조 및 별표2)

- 나.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위약금 규정 신설(안 제9조)
- 라. 입장 제한 및 퇴장 등 규정 신설(안 제10조)
- 마.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규정 신설(안 제11조)
- 바.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규정 신설(안 제12조)
- 사. 관리자 예약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별표3)
- 아. 매매·교환 등 금지 규정 신설(안 제14조)

3. 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9
- 나.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024.06.13. ~ 2024.07.03.(특이사항 없음)
-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 라. 성별 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 마. 규제 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개정전문】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전부개정조례 (안)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고령군 미송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한다.

② 고령군 미송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미송산 자연휴양림 고시지구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상북도 고령군 내의 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과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현금징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령군이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고령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예약 신청 전 감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8.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예약 신청 전 감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

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 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

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의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대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위탁 관리·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자연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의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미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6조제1항과 관련)

1. 일반 기준

-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다. “비수기”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라.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마. “고령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고령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사.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아.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자. “고령군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증명서상 고령군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차. “다자녀가정”, “고령군 다자녀가정”의 인원수는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기준-최대 인원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비수기 및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숲속의집	자작의집 (36.9m ²)	2-4인	1동/1박	60,000	100,000	
	편백의집 (39.14m ²)	2-4인	1동/1박	60,000	100,000	
	미송산집 (39.68m ²)	2-4인	1동/1박	60,000	100,000	
	향토집 (63.9m ²)	4-8인	1동/1박	80,000	150,000	
	숲속의집 (114.2m ²)	8-15인	1동/1박	100,000	200,000	
산림문화 휴양관	휴양관 (69.3m ²)	4-10인	1실/1박	70,000	140,000	
	세미나실 (103m ²)	-	1회/4시간	60,000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숙박시설 이용시 세미나실 사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제2항과 관련)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비수기)	비 고
시설사용료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 관)	고령군민	요금의 50% 할인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5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50% 할인	
	고령군 다자녀가정	요금의 70% 할인	

가.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나. 시설사용료의 감면은 1인 1실, 비수기 및 주중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약당사자가 직접 예약하고 본인이 관련 서류를 사용 첫날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자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감면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시 적용 가능하다.

라. 요금 감면 서류 미확인 또는 예약내역과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감면 적용이 취소된다.

마. 시설의 관리·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대장

(제13조제3항과 관련)

주무관	팀 장

1. 예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약사유 :■ 사 용 자 :■ 예약일자 :■ 사용일자 :■ 사용목적 :

2. 특기사항

<p>※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방문, 각종사건 등 기재</p>

[관련법령 발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시설사업소	
연 락 처	(054) 950 - 7493